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37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김재섭 · 김미애 · 김정재  
서천호 · 최수진 · 고동진  
엄태영 · 이달희 · 김상훈  
박수영 · 권영세 · 백종현  
김장겸 · 김기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

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 까지, 제44조의16·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 ① 이용자 및 게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게재·유통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재·유통되려는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게재 또는 유통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관 관리·운영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의 제목 중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12의 제목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을 “불법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를 “불법정보로”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을 “불법정보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의13제3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 한다.

제44조의14제1항제2호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를 “불법정보에”로 한다.

제44조의16·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u>&lt;신 설&gt;</u></p>	<p>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u>제3조의2(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 ① 이용자 및 게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게재·유통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u></p> <p><u>③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재·유통되려는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게재 또는 유통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여서</u></p>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 9. (생략)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

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 9. (현행과 같음)

<삭 제>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  
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  
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  
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  
라 한다)

③ ~ ⑥ (생략)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  
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  
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  
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  
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  
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  
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 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

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

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  
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  
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

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  
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

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  
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

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

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

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  
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삭 제>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  
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  
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  
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  
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

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

제44조의12(불법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  
-----  
-----불법정보를-----  
-----.

② -----  
-----불법정보로-----  
-----불법정보인-----  
-----  
-----.

③ -----  
-----  
-----

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8. (생략)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략)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  
-----  
-----  
-----.

이 경우 해당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④ -----  
-----  
-----  
-----.

이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조치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생략)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불법정보의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불법정보의-----  
-----  
-----

4.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

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생략)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6. (생략)

② ③ (생략)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

-----  
-----  
-----  
-----  
-----.

1. (현행과 같음)

2. -----불법정보의-----  
-----  
-----  
-----

3. (현행과 같음)

4. 불법정보에-----  
-----  
-----  
-----  
-----

5. 6.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삭 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

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삭 제>

<삭 제>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